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배재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21년 12월 일
제 출 자 : 배재만, 전수곤, 김영래
구교강, 김성우, 도희재, 황숙희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에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를 제59조로 변경

3. 조 례 안 : 붙 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2. 17. ~ 12. 21.

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성주군의회 규칙 제 호

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규칙은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”를 “규칙은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5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규칙은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59조----------.

붙임 관련 법령

▣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59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